

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

1. 견적제출 사항

- 가. 공 사 명 : 2026년 경제림 및 산림재해방지림 조성사업(2권역)
- 나. 위 치 :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96외 6필지
- 다. 공사 규모 : 15ha
- 라. 공사 기간 : 착공일로부터 28일

| 추 정 가 격     | 부 가 가 치 세  | 관 급 자 재 | 비 과 세 자 재 | 기 초 금 액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15,909,091 | 11,590,909 | -       | -         | 127,500,000 |
| A값 합계       | 국민연금보험료    | 국민건강보험료 | 퇴직공제부금비   |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|
| 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  |
| 1,458,951  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| 안전관리비   | 품질관리비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,458,951  | -       | -         |             |

< 사업지 유의사항 >

입찰자는 입찰 전 사전에 현지를 답사하여 진입로 및 현장 여건과 민원 발생 요소 등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1. 사업추진 전 산주 및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연락 및 협의해야 하며,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 해야 합니다.

2. 계약자는 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”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3. 계약자는 “산업안전보건법”에 따라 매월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“안전보건협의체” 및 사업 간담회 등 참석하여야 하며, 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등 실시할 경우 현장 안내 및 점검에 참여해야 합니다.

2. 견적서 제출방법 : 총액견적, 소액(견적)수의, 적격심사 비대상

### 3.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

가. 견적서 제출기간 : 2026.09.09.(수) 13:00 ~ 2026.09.15.(화) 12:00

나. 결정일시 및 장소 : 2026.09.15.(화) 13:00 이후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

다.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,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(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)

### 4. 견적제출자격

가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』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,

나. 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4조에 의거 등록된 **산림사업법인** 중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25조의 “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”에 명시된 “**산림사업법인(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)**”으로서,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**평창군지역**으로 개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
※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사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.

다.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(G2B)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
라.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(입찰자용)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### 5.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$\pm 3\%$ 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,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(업체별 2개씩 선택)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나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
※ 낙찰하한율(%)은  $(\text{입찰가격} - A) / (\text{예정가격} - A) \times 100(\%)$ 으로 계산됩니다.

다.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
6. 견적제출의 무효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,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42조 및 입찰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.

7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

- 가. 계약상대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「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,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8.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

- 가.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(산출내역서 포함)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.
- 나. 산업안전관리비는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
(단위 : 원)

| 건강보험료 | 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연금보험료 | 퇴직공제부금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1,458,951 |

9.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

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「건설기계 관리법」 제22조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(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)를 제출하고,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0.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,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.
- 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(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),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

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라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에 따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마. 「**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**」 및 「**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**」에 따라 **우리군 지역 업체와 하도급(50% 이상)을 적극 권장합니다.**

#### 11.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

가.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·입찰유의서·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계약특수조건·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·청렴계약특수조건, 설계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라.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견적제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“정정공고” 게재합니다.

마. 계약상대자는 「**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**」 및 「**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**」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,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.

바.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, **평창군산림조합(☎333-4122)**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9일

**평 창 군 산 림 조 합 장**